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 및 대부료의 특례적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5~8%에서 연 4~6%로 하향 조정함(안 제22조)

○ 2개년도 이상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에 있어 현 년도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2 제1항)

○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현행은 15%의 연체율을 일괄 적용하고 적용기간도 제한이 없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15%로 하향 조정하고 적용기간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제1항)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용어 등을 수정함
(안 제6조 제1항, 제7조, 제11조 제4항, 제14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4조 제1항, 제25조의2 제4항, 제31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관련법령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한다)" 을 "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공유재산심의회)"를 "(군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허가조건

제19조의2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5퍼센트"를 "연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연8퍼센트"를 각각 "연6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의 말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의" 를 "제23조제3항의" 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하고,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하며,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의3중 "제3조의"를 "제3조의1 "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기부채납원부)"를 "(기부채납원칙)"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47조의중 "규격"을 "규칙"으로 한다.

제58조의중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하고 "제58조"를 "제56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2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생략)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 ---------- ---------- ---------- ---------- 1.~2. (현행과 같음)
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③ (생략)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③(생략)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③(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6. (생략) 〈신설〉	제14조(사용·수익허가) ---------- ---------- --------- 명시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7. 허가조건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연 4퍼센트----------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 ----------연 6퍼센트----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③---------- ---------- ----------6퍼센트--- ---------- ----------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 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서조항 신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⑤ (생략)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 ---------- ---------- ---------- ---------- ---------- ②~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세입세출외 현금-- ---------- ----------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교환차액을 ---------- ---------- ---------- ---------- ----------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1 ---------- ---------- ---------- ----------
제40조(기부채납원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0조(기부채납원칙) ---------- ---------- ---------- ---------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 ①----------<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7. (생략)	제47조(청사의 설계) ---------- 규칙---------- 1.~7.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6조----------